

파주시설게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4
----------	-----

제출년월일 : 2000. 12. .

제출일 : 파주시장

□ 제안이유

파주시설게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의 범위중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설계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긴급한 재해복구의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설계변경되는 공사의 경우 새로운 공법이나 구조변경 없이 단순물량이 증감하는 공사도 재차 받아야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설계자문대상공사중 긴급재해복구공사, 하천준설공사, 설계감리를 한 공사, 문화재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공사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등은 설계자문을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설계변경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를 공사비와 관계없이 특별한 공법이나 구조적 변경이 있는 공사에 한해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설계자문위원회 개의요건을 위촉위원 10인이상 참석으로 하던 것을 위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2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①위원회에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수 있다.

1.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문화재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7. 공사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

제9조 제2항중 “위촉위원중 10인이상”을 “위촉의원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건설과 ☎940-4652
입안자	건설과장	김영구
	도로건설담당	김홍식
	담당자	전제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설계동자문대상공사)①위원회설계동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대상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제6조(설계동자문대상공사)①위원회에설계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 증감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삭제)
〈신설〉	②제1항에 의하여 설계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수 있다.
	1.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문화재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
	6.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7 공사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회의)① 생략	제9조(회의)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10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